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
제424회 국회 **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의록**
(임시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7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상정된 안건

- | | | |
|---|-------|---|
|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 2 |
|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 2 |
|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 2 |
|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 2 |
|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 | 2 |
|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 | 2 |

(13시35분 개의)

○소위원장 이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

은 남은 쟁점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정리된 전체 조문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3시36분)

○소위원장 이수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쟁점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세 차례 소위 심사 결과 마지막 남아 있는 논의 필요사항은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자료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별지2-2를 보시면 됩니다. 별지2-2의 42쪽부터 44쪽까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오고 그 해당 대안을 확인하신 후에 논의하시기로 지난 소위에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3차 소위 이후에 기재부 국토부 또 공항공사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1항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이 부분은 세월호법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단에 대해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재단 설립 이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했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세월호하고 같은 거고요. 4항에는 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른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그동안 우리가 논의됐던 사안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부분이니까 마지막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어떤 누구가 범인인 만큼 또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이 사단법인이 유가족들이 나중에 보상을 다 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잘 세심하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안을 적절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사단법인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구절에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단 설립까지의 예상 소요기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언제까지 하게 되고 언제부터 어디까지를 재단법인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볼 건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세월호 사례를 보면 먼저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사고가 14년도 4월 16일 날 났는데 사단법인은 16년 1월 22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18년 7월 9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10년의 범위 내로 정해 놨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월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5월 달 정도는 사단법인 설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는 빠른데 재단법인 설립은 어떻게 보면 유가족 단체의 뜻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제쯤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유가족 대표와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숙 위원 충분히 유가족들하고 조율하시고 재단법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마지막 쟁점이었던 사단법인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셨고요.

차관님,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랑 협의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저희가 그사이에 협의를 했고요. 일단 한국공항공사로 한정할 것인지 조금 더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령을 준비하면서 그 대상 기관을 설정할 거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게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설립하기 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령으로 담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협의가 잘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쟁점 사항 정리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조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2-2, 2쪽입니다.

제정법안 지금까지 소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를 마치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한 오른쪽의 통합수정의견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의된 의원님들의 안들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문구를 마련했습니다.

제2조(정의) 조항의 제1호는 12·29여객기참사에 관한 정의로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3쪽 2호 정의는 희생자에 관한 정의고 3호는 피해자에 관한 정의입니다. 희생자 및 피해자에 관한 정의는 의원님들 발의하신 안들을 통합해서 조정해서 마련했고, 다음 쪽 4쪽을 보시면 그 피해자 중에 추가로 피해 인정 절차를 통해서 추가되는 피해자를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 하단의 피해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상단의 2차 가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담았던 김은혜 의원안의 2차 가해 정의 규정은 2차 가해에 관한 내용이 딱 한 조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해당 조문에서 약칭해서 규정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유가족단체의 정의 규정을 반영했고 3조(피해자의 권리) 부분도 의원님들의 안을 통합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7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의원님들의 안을 통합해서 조문은 마련하였고 다만 2차 가해에 관련한 사항들은 뒤에 별도 조문으로 마련하되 각 국가의 책무 부분에 반영하신 의원님들의 안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보시면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반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의 규정에 있던 내용을 해당 5조에서 약칭을 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1항은 국가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2항에서는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6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특별법의 성격을 반영해서 규정을 하고 바로 아래에 나오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하단에 나온 참사피해 구제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도 역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16쪽, 제7조(지원의 원칙)입니다.

역시 소위 논의 결과와 각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1, 2, 3항과 4항부터 문금주 의원님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별도 조문에서 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에 관한 조문입니다.

역시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문구를 반영했고 아래에 나오는 9조는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서 규정을 하고 2항에서는 ‘해당 특별지원방안에는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문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19쪽의 제20조(무안국제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항은 소위 논의 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결과를 반영하였고, 바로 아래 10조(생활지원금 등)의 1항 1호 생활지원금 및 2호 의료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각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해서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 안에 나오는 기타지원금 부분은 별도 조문에서 특별지원금 형태로 다시 규정을하도록 하고, 그 아래에 나오는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있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보칙에 해당 규정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1쪽, 계속 이어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에 관한 규정 2항 및 3항을 의원님들의 안을 통합 조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11조에 방금 말씀드렸던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2쪽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등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까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통합수정의견안 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에 대해서 국가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마련했고, 14조는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되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쪽 24쪽에 나오는 치유휴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역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으로 의원님들의 제정안들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25쪽입니다.

16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등이 피해자들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6쪽 상단에 나와 있는 특례 입학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특례 조항과 그리고 다음 쪽 27쪽까지 해당 조문들은 의원님들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서 모두 반영을 하되 27쪽 상단에 나

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규정은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미 지원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조문에서 일상생활돌봄 지원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아래 19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항과 다음 쪽 29쪽의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사항 역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내용을 조정해서 조문에 반영했습니다.

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에 관한 조문도 29쪽과 30쪽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각 제정안과 소위 논의 결과를 통합 조정해서 조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쪽 하단의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부분도 30쪽과 31쪽에 걸쳐서 나오는데 역시 소위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트라우마치유시설,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위 논의 결과 기존의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해당 조문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문단의 운영 조문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다음 3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항에 자문단의 숫자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하되 자문위원은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했고, 국토교통부 의견과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자문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쪽, 34쪽의 제3장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24조(추모사업 및 장기추적 연구 등 시행)에 관한 조문입니다.

역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조문을 마련했고 장기 추적 연구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행사에 관한 부분은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삭제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항, 3항까지 24조의 추모사업에 관한 조문이고요.

36쪽의 제25조,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입니다.

역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조문을 마련했고 2항에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피해자 확인, 즉 사실상의 배우자 등 확정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확인에 관한 사항을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하고 치유휴식에 관한 사항도 역시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6쪽 하단과 37쪽까지 지원·추모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위원 위촉에 관한 조문을 5항으로 마련했고, 6항에는 유가족인 위원

이 있을 경우에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하여서 유가족인 위원은 추모사업에 관한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지원·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후에 나오는 지원단에 관한 조문에서 통합해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39쪽 상단에 역시 유가족인 위원은 분과위원회 중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도록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26조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앞서 말씀드린 지원조직에 관한 업무와 지원단의 업무를 통합해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둔다’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0쪽에는 이어서 해당 지원단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하단의 2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에 관한 근거 조문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통합수정의견안 28조(추모사업 등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조문을 마련하였고, 추모시설의 위치의 관한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역시 각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조문으로 반영하였고, 다음 쪽 42쪽에 나오는 재단 및 사단에 관한 사항은 서두에 논의하신 정부 측 대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3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는 기존의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반영을 했고 이번에 사단에 관한 조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 모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에 관한 조문은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회는 제외하고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46쪽입니다.

46쪽 하단의 이수진 의원님안 전진숙 의원님안 권향엽 의원님안에 있던 사고조사위원회에 국회에서 사고조사위원 및 사고조사관을 추가로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은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되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예산의 독립성에 대한 보완조치를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한다’는 형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소위 논의 결과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보칙 첫 번째, 제33조(비밀준수 의무)는 지원·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들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2차 가해 금지에 관한 조문들은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특별법에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제34조(자격사칭 금지) 역시 지원·추모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35조는 권리의 보호 조문이고 36조는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입니다. 모두 각 제정안들의 내용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리하였고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 외의 지방자치단체도 부당이득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국가등’으로 주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 50쪽의 하단, 42조(12·29여객기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소위 논의 결과와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으로 현행 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별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도 각 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조문을 마련하였고, 마지막 제5장 별칙의 첫 번째 38조(별칙) 규정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53쪽은 2차 가해 관련한 별칙 규정으로 삭제를 했고, 54쪽의 별칙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밀준수 의무 위반자와 자격사칭 금지 규정 위반자 그리고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자에 대해서 별칙 규정을 세월호법의 별칙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55쪽은 모두 삭제를 하고, 56쪽의 ‘2년 이하의 징역’ 부분은 세월호법의 사례와 맞추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부분으로 모두 상향해서 앞서 규정한 바 있고요.

57쪽의 과태료 부분은 모두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부분이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시행일입니다.

이 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고, 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추모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유가족단체 구성 등을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준비행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 60쪽의 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는 제3조와 61쪽의 제4조 그다음에 5조(치유 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마지막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까지 모두 필요한 부칙조항을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방금 보고한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백선희 이달희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첨가 위원(2인)

김대식 김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우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백원국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임호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경찰청
형사국장 유재성